

일본에서 식품 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Dimethyl Dicarbonate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지정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1조(후생노동성 고시 370호, 1959년)에 따라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적합한 식품첨가물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함.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하여 Dimethyl Dicarbonate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식품 첨가물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함.

사용기준

Dimethyl Dicarbonate는 과실주 및 무알코올 음료 이외의 식품(미네랄 워터 제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사용되는 Dimethyl Dicarbonate의 양은 과실주(포도주 제외) 및 무알코올 음료에서 0.25 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포도주에서 0.20 g/kg을 초과해서는 안됨.

시행일 : 2020년 01월 15일